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세청에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총괄 관리와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·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(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을 증원하고, 국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지방국세청에 관할 세무서 청사의 신축·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870”을 “87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66”을 “86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853”을 “856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9,965”를 “19,96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9,965”를 “19,966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9,941”을 “19,94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국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70</u>	<u>873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866</u>	<u>869</u>	+3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53</u>	<u>856</u>	+3
·	·	·	

[별표 3]

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9,965</u>	<u>19,966</u>	+1
일반직 계	<u>19,965</u>	<u>19,966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9,941</u>	<u>19,942</u>	+1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1